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10656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9.[1] 원고에게 한 취득세 33,818,750원, 교육세 2,681,85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0,347,350원, 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820,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1) 원고는 청구취지에 각 부과처분일을 '2020. 12. 11.'이라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부과처분일은 2020. 12. 9.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표시한다.
2) 원고는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과 교육세에 대한 가산금을 구분하지 않고 '가산금 11,167,400원 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2006. 3. 30.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1. 7. 19.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B은 2013. 1. 30. ○○○시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교육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8. 원고가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이 위와 같이 체납한 취득세 33,818,750원, 교육세 2,681,850원, 가산금 4,872,3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2. 7. 종전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 ○○구 I건물, J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납부통지서는 2019. 2. 15.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6.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9. 4. 7. 원고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 ○○구 K건물, L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납부최고서는 2019. 4. 16.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2. 위 납부최고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 이 법원에 '원고는 B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0. 10. 27. 종전 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들은 별개의 세목에 대한 별개의 가산금 부과처분으로서 소송물이 다르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과 교육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을 구분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9구합12987 판결).

바. 이에 피고는 2020. 12. 9. 다시 원고가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이 위와 같이 체납한 취득세 33,818,750원, 교육세 2,681,850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0,347,350원, 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820,0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2019. 6. 17. 피고에게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독촉장, 체납최고서 등 ○○○시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변호사 ○○○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등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수령권한을 수임하자 피고는 위 변호사의 주소지로 위 납부통지서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20. 12. 21.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7. 18. B의 대표이사에게 15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던 B의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받았을 뿐 B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를 B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3)]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같다) 제47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3) 한편, 지방세에 있어서도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 제98조 제3항, 제6항은 2021.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지방세기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4호) 제1조 단서 제2호],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지 않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위 2)항에서 본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가 정한 체납 지방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B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3. 1. 30. 당시 원고가 단독으로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원고가 2013. 1. 30. 당시 B의 과점주주였고, 그 무렵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현실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갑 제1, 7,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1)항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B 주식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자신이 B의 대표이사에게 1억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차용증에는 원고의 처 M가 2011. 7. 18. N에게 1억 5,3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N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또한 N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2013. 1. 30. 무렵 B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B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다.

③ 달리 N이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거나 원고가 N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원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는 N이 'O'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B 주식 100%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원고가 B의 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별지

관 련 법 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